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1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6462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7. 4. 4.
판 결 선 고	2017. 5. 16.

주 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등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17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redacted]시 C 대 45719.9㎡(이하 '이 사건 아파트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이 각 설립되었는데(이하 각 조합을 순번에 따라 '제O 조합'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각 제3 조합의 조합원이다.

순번	조합명	설립인가일	대표자	조합원
1	D주택조합 (2003. 8. 14. E지역주택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0. 11. 28.	F	F 등 21명
2	G지역주택조합 (2003. 8. 14. H지역주택조합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	2001. 9. 3.	I	I 등 720명
3	J지역주택조합	2002. 2. 20.	K	K 등 585명
4	L지역주택조합	2002. 12. 3.	M	M 등 108명

나. 제1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면적 54,145㎡, 이하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라고 한다) 중 일부인 [redacted]시 N 답 68㎡ 등 면적 47,299.72㎡에 해당하는 부지(이하 '이 사건 계쟁 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 12.경 제1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 및 수익자를 F 등 21명, 수탁자를 제1 조합으로 하는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계쟁 부지에 관하여 2002. 12. 28.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제1 내지 4조합이 수탁자(합유)로 변경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합유등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17

라고 한다)가 마쳐졌는데, 제2, 3, 4조합은 관할관청에 이 사건 합유등기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31조 제1항 제3호 (2)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취득에 관한 등록세율에 의한 등록세가 아니라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이 사건 계쟁 부지 각 1필지당 3,000원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제1 내지 4 조합은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계쟁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6845.28㎡에 해당하는 부지(이하 '이 사건 잔여 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각 조합을 합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 및 수익자를 제1 내지 4 조합의 전체조합원 1,339명, 수탁자를 제1 내지 4조합으로 하는 신탁등기를 마쳤다.

마. 제2, 3, 4 조합은 2007. 8. 10. 이 사건 계쟁 부지의 3/4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합유등기일인 2002. 12. 28.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과세표준을 25,462,984,5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합유등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세(세율: 1,000분의 30)를 신고·납부하지는 않았다.

바. 이 사건 아파트 대지 위에 O아파트(1,396세대)가 완성되어 2007. 8. 31.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원고 A은 위 아파트 108동 1902호에 관하여, 원고 B은 위 아파트 105동 401호(이하 '원고들 전유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2. 13. 각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 A은 2015. 4. 2., 원고 B은 2015. 4. 14. 각 피고에게, 원고들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 대지 중 34.0953㎡에 대한 지분소유권(이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17

'이 사건 각 지분'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 84,215,391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 (2)의 등록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된 등록세 1,684,300원, 지방교육세 336,860원 합계 2,021,160원을 각 신고 납부하였다.

아. 원고 B은 2015. 4. 22., 원고 A은 2015. 5. 8.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자. 원고들은 2015. 5. 29. 피고에게 원고들이 위 사.항과 같이 납부한 등록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7. 원고들의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차. 이에 원고들은 2015.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3. 11. 이 사건 잔여 부지와 관련된 등기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나.목에 따라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한 등록세 중 이 사건 잔여 부지의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면적 비율인 12.64%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세액으로 경정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카.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각 신고 · 납부한 해당 등록세 중 212,900원, 지방교육세 42,580원 합계 255,480원씩을 각 환급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자.항 기재 2015. 6. 17.자 경정거부처분 중 위와 같은 환급세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17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내지 4 조합은 각 조합원 전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P연합주택조합이라는 연합조합을 결성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위 각 조합은 설립시기만을 달리할 뿐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합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본문(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해당하는 규정이다)은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 조합은 원고들을 포함한 제1 내지 4 조합 조합원들로부터 등록세 명목의 분담금 4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 취득을 위한 금전을 신탁받아 위 자금으로 이 사건 계쟁 부지를 매수하고, 제1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계쟁 부지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하였는바, 원고들은 제1 조합을 통해 이 사건 계쟁 부지 중 이 사건 각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한 후 이에 대한 등록세를 이미 납부한 셈이 된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원고들이 취득한 것을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조합이 주택조합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동일인으로 보아 납세자를 조합원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의 제정취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들의 등록세 신고 · 납부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계쟁 부지에 관한 실질적인 위탁자이자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나.목에 따라 등록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3) 원고들의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이 사건 합유등기일인 2002. 12. 28. 또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17

원고들 전유부분에 관한 사용승인일인 2007. 8. 31.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일자인 2015. 4. 2. 또는 2015. 4. 14. 당시에는 이미 5년의 등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4)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마친 2015. 4. 22. 또는 2015. 5. 8.을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본다면, 원고들의 위 각 등기는 위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시행 중인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에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내지 4 조합이 이 사건 계쟁 부지에 관한 등록세를 납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05조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동조 제10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주택조합이 취득한 부동산 중 주합주택용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는 조합원만이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계쟁 부지에 관하여 제1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이 사건 계쟁 부지 중 제1 조합의 조합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제1 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것에 해당하고, 제2, 3, 4 조합이 제1.의 마.항과 같이 이 사건 합유 등기 이후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17

계쟁 부지 중 3/4 부분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한 것 또한 위 각 조합이 위 각 조합의 조합원들 대신 이 사건 계쟁 부지 중 조합원들의 취득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의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구 지방세법 제124조에는 위 제105조 제10항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조합 명의로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주택조합이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가., 나., 다.목에 따라 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만이 발생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제1 조합 또는 제2, 3, 4 조합이 이 사건 계쟁 부지의 권리 취득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각 조합이 등록세의 고유의 납세의무자로서 이를 납부한 것에 해당할 뿐, 위 각 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제1 조합이 제2 내지 4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등록세 명목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제1 조합이 자신이 납부할 등록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 내부적으로 비용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그 권리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게 된 이상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등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나.목에 따라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나.목은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17

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 부지의 수탁자인 제1 내지 4 조합과의 관계에서 위탁자이자 수익자에 해당한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과 관련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어 원고들은 등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 부지에 관하여 수탁자인 제1 내지 4 조합과의 관계에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법상 신탁관계에 있고, 위탁자이자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신탁등기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위탁자 자체를 변경하는 등기 신청이 금지되어 최초에 이 사건 계쟁 부지에 관하여 제1 조합을 수탁자, 제1 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한 신탁등기가 마쳐진 이후 제2, 3, 4 조합이 이 사건 합유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위탁자가 제2, 3, 4 조합의 조합원들로 변경되지 않아 이 사건 계쟁 부지의 위탁자와 수익자는 여전히 제1 조합의 조합원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나.목이 적용되어 등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등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이므로 원고들의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지권 등기일인 2015. 4. 22. 또는 2015. 5. 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17

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02. 12. 28. 또는 2007. 8. 31.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은 취득세로 통합되어 그 근거 규정이 없어지고, 다만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었는데(이하 '전부개정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지방세법 부칙(2010. 3. 31.) 제1조, 제6조는 전부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인 2011. 1. 1. 이전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위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 부지 중 원고들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지분을 취득한 시기는 원고들이 소속된 제3 조합 명의의 이 사건 합유등기가 마쳐진 2002. 12. 28. 무렵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9. 10. 대통령령 2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17

있어서의 취득일로 보고 있으므로, 늦어도 원고들이 제3 조합에 분담금을 모두 납부하고 원고들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07. 12. 13.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전부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 지방세법 부칙(2010. 3. 31.) 제6조에 따라 여전히 등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순

판사 곽태현

판사 문중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17

별지

관련 법령

■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①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등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⑩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贈與·寄附 기타 無償取得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17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8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信託法에 의한 信託으로서 信託登記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등록

나.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다만,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다.

다. 신탁의 수탁자 경질의 경우에 신수탁자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 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9. 10. 대통령령 2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17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끝.